

업무협력 협약서

서울디자인재단 | 서울시설공단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운영에 따른 패션 산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, 시민중심의 패션 분야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업무)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업을 협력한다.

1. 공단의 관리 시설물을 활용한 사업 협력 추진

- 서울디자인재단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활용할 경우 업무 협력
-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구 유어스 빌딩 4층, 5층 및 시설물의 활성화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 협업 공간 조성 관련 업무 협력
- 공공시설인 DDP 미디어 캔버스 설치를 위한 건물 외곽 시설관련 인허가 사항 협조

2. 패션 분야 교육 및 홍보 상호 협력

- 서울시설공단 패션 분야 업무수행 능력 역량강화 및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브랜드 홍보를 위한 교육
 - 입점상인 대상 패션 디자이너 권리보호 교육 및 상표디자인특허 등록출원 관련 컨설팅
 - 입점상인 대상 해외 진출전략·마케팅 교육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
-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패션 분야 사업 진행과 연계되는 업무 컨설팅
- 양 기관의 발행 간행물, 홈페이지, 뉴스레터 등을 통한 상호 홍보

제3조 (브랜드사용) 양 기관은 서울시 브랜드 DDP의 관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, 동 브랜드의 관리를 위한 실무협력 체계를 구축, 운영하고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.

1.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DDP 브랜드 사용과 관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력 이행

- ①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공공재산인 DDP 브랜드의 과도한 상업적 이용 및 법적분쟁의 예방을 위해 자체 브랜드 운영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활동을 이행하고 관련사항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신속히 통지한다.
- ② 구 유어스 빌딩의 DDP 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은 건물 내·외부 간판, 안내 싸인물 및 외관시설 정비 시 DDP 브랜드 전략과의 부합 여부를 서울디자인재단과 논의한다.

제4조 (비용부담) 제2조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은 공동부담으로 하며, 협약체결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.

제5조 (비밀의 준수) 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,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양해각서 효력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 이를 위반 시 발생하는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.

제6조 (신의성실의 의무) 양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.

제7조 (협약의 발표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상호간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1년씩 연장한다.

제8조 (해지)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한다.

제9조 (보관) 본 업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7월 12일



대표이사 이 근
서울디자인재단

이사장 이 지 윤
서울시설공단